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공사감독자 및 검사자 선임(위임) 등 업무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 산림생명자원과, 산림바이오과,
완도수목원)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이하 “산림자원연구소”라 한다)에서는 2018. 10월
부터 감사일(2021. 10. 1.) 현재까지 총 105건의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
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절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2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수·인계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소의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수·인계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했다.

아울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별표 1]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 선임(위임) 명세”와 같이 105건의 공사는 계약담당자가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자 및 준공(기성)검사자를 유선으로 선임(위임)하면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일반행정직 직원을 52건의 공사감독자로 선임하여 감독하게 하였으며

또한 검사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는데 일반행정직 직원을 67건의 검사자로 위임하여 검사를 하여 계약내용의 위반 및 부당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지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공사감독을 완료하였으며, 검사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는데 시정조치 없이 검사를 완료하여

공사 시설물이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품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하자 등 발생 시 감독자, 검사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연구소의 건설공사 업무추진 신뢰도에 훼손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산림자원연구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연구소는 건설공사의 감독자 및 검사자를 적절하게 임명(위임)하여 토목공사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토목)직 직원 증원 요청 등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특성화사업 등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산림자원연구소(완도수목원)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이하 “산림자원연구소”라 한다)는 2018. 10월부터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등’ 10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는 2021. 10. 1. 감사일 현재 시행했던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등 설계도서 및 사진을 살펴본 결과 7개 현장에서 시공 소홀, 미시공 등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표] “완도수목원 숲길조성사업 등 미시공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현황”과 같다.

[표]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등 미시공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현황

연번	공 사 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공사비 (천 원)	지적내용	금 액 (천 원)	조치 내용
계	7건			1,658,516	회수 21,528		
1	2018년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2018.7.23. ~ 2018.10.20.	(주)○○○ ○○○	61,019	숲길 개설 1,339m 인력시공→장비시공 등	5,050	회수
2	2019년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2019.5.13. ~ 2019.8.9.	(주)○○○ ○○○	115,066	숲길 개설 2,063m 인력시공→장비시공 등	3,170	회수
3	2020년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2020.6.1. ~ 2020.8.25.	○○○ ○○○	264,693	숲길 개설 3,400m 인력시공→장비시공 등	2,390	회수
4	2021년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2021.4.27. ~ 2021.8.19.	○○○(주) ○○○	161,284	숲길 개설 2,296m 인력시공→장비시공 등	4,650	회수
5	2019년 완도수목원 특성화사업	2019.8.19. ~ 2020.1.18.	○○○(주) ○○○	342,040	후박나무 등 전정 작업 시 트럭 탑재형 크레인 미사용 등	3,986	회수
6	2020년 완도수목원 특성화사업	2020.7.6. ~ 2021.1.1.	(주)○○○ ○○○	158,023	낙엽수 등 전정작업 시 트럭 탑재형 크레인 미사용	1,182	회수
7	2020년 완도자연 휴양림 보완사업	2020. 7. 24. ~ 2021. 12. 11.	○○○ ○○○	556,391	수평규준틀 11개소 미설치	1,100	회수

자료 :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가.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산림자원연구소(완도수목원)는 (주)○○○○(대표이사 ○○○)과 2018. 7. 17. 계약하고 2018. 10. 20. 준공한 “2018년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61,019천원)¹⁾”에서 숲길(1.5m, 0~60%) 1,339m를 개설하면서 설계내역에 인력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굴삭기)를 사용하여 개설하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5,050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산림자원연구소(완도수목원)는 (주)○○○○(대표이사 ○○○)와 2019. 5. 9. 계약하고 2019. 8. 9. 준공한 “2019년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115,066천원)²⁾”에서 숲길(1.5m, 20~60%) 2,063m를 개설하면서 설계내역에 인력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굴삭기)를 사용하여 개설하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3,170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산림자원연구소(완도수목원)는 ○○○○(주)(대표이사 ○○○)과 2020. 5. 29. 계약하고 2020. 8. 25. 준공한 “2020년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264,693천원)³⁾”에서 숲길(1.5m, 20~60%) 3,400m를 개설하면서 설계내역에 인력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굴삭기)를 사용하여 개설하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2,390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산림자원연구소(완도수목원)는 ○○○○(주)(대표이사 ○○○)와 2021. 4. 9. 계약하고 2021. 8. 19. 준공한 “2021년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161,284천원)⁴⁾”에서 숲길(1.5m, 20~60%) 2,296m를 개설하면서 설계내역에 인력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비(굴삭기)를 사용하여 개설하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4,650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나. 완도수목원 특성화사업 등

산림자원연구소(완도수목원)는 ○○○○(주)(대표이사 ○○○)와 2019. 8. 13. 계약하고 2020. 1. 18. 준공한 “2019년 완도수목원 특성화사업(342,040천원)⁵⁾”에서

1) 사업규모 : 숲길개설(1.5m, 0~20% 경사) 469m, 숲길개설(1.5m, 20~40% 경사) 360m, 숲길개설(1.5m, 40~60% 경사) 510m 등

2) 사업규모 : 숲길개설(1.5m, 20% 경사) 518m, 숲길개설(1.5m, 40% 경사) 997m, 숲길개설(1.5m, 60% 경사) 548m 등

3) 사업규모 : 숲길개설 3,400m 등

4) 사업규모 : 숲길개설 2,296m 등

5) 사업규모 : 황토포장 1,157㎡ 등

후박나무 등 29주 전정 작업 시 트럭탑재형 크레인(5톤)을 반영하여 전정토록 계획하였으나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전정한 후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3,986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산림자원연구소(완도수목원)는 (주)○○○○(대표이사 ○○○)과 2020. 6. 26. 계약하고 2021. 1. 1. 준공한 “2020년 완도수목원 특성화사업(158,023천원)⁶⁾”에서 낙엽수 등 163주 전정 작업 시 트럭탑재형 크레인(5톤)을 반영하여 전정토록 계획하였으나 트럭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전정한 후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182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산림자원연구소(완도수목원)는 ○○○○(○○○)과 2020. 7. 20. 계약하고 2020. 12. 11. 준공한 “2020년 완도자연휴양림 보완사업(556,391천원)⁷⁾”에서 수평규준틀 11개소를 설치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100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산림자원연구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따라 ‘2018년 완도수목원 숲길 조성사업’ 등 7건의 사업에 과다 지급한 21,528,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6) 사업규모 : 도막포장 1,080㎡, 인조잔디포장 237.5㎡ 등

7) 사업규모 : 선형개량 1.56km 등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 산림생명자원과, 산림바이오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이하 ‘산림자원연구소’라 한다)는 2018. 10월부터 2021. 9. 30. 감사일 현재까지 ○○○ 등 기간제 근로자 140명을 채용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및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따라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인사부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면접위원에게 교육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시험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은 응시 자격 기준을 심사하고, 2차 면접시험은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금지하는 등 블라인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수행 능력, 적극성, 성실성, 의사표시 정확성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 산림생명자원과)는 [표 1] “서류전형만 시행한 기간제 근로자 직원 채용 현황”과 같이 7건, 18명에 대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서류만 심사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 산림생명자원과, 산림바이오과)는 모든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인적정보를 음영 처리 않고 자격요건 심사표와 자격요건 심사대상 자료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지원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효율적인 인력채용관리를 저해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표 1] 서류전형만 시행한 기간제 근로자 직원 채용 현황

연번	채용 실과	사업명	피계약자	채용일	직종	비고
	계	7건	18명			
1	○○○과	○○○구	○○○	20○. ○. ○.	기간제	
2	○○○과	○○○관리	○○○, ○○○	20○. ○. ○	기간제	
4	○○○과	○○○컨설턴트	○○○, ○○○	20○. ○. ○	기간제	
5	○○○과	○○○ 패트롤	○○○ 등 5명	20○. ○. ○	기간제	
6	○○○과	○○○관리	○○○ 등 7명	20○. ○. ○	기간제	
7	○○○과	○○○관리	○○○	20○. ○. ○	기간제	

자료 :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림자원연구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법한 업무추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직원 채용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조사분석수수료 등 세입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 산림생명자원과, 산림바이오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이하 ‘산림자원연구소’라 한다)는 임산물 등 임업시험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사분석수수료, 시험성적서 사본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이용료·사용료·체험료를 징수 및 세입처리 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된 차량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고 매각 또는 폐차 처분하고 있다.

2. 조사분석수수료 등 징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시험수수료 및 사본 교부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는 시험성적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시험 및 분석 의뢰자에게 시험수수료,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본 교부 수수료를 전라남도 수입증지로 징수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산림바이오과)는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지 않고, 추후에 관리팀에 세외수입고지서 발행을 의뢰하여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158일까지 수수료 수납일을 지연하였다.

그 결과 [표 1] “조사분석수수료 징수 현황”과 같이 수수료 수납일이 지연되거나 세입이 늦어지고, 체납관리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1] 조사분석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 : 원, 일)

연번	의뢰일자	의뢰자	의뢰항목	분석수수료	수납일	지연일수
1	2018. 03. 08.	○○○	○○○ 등	600,000	2018. 08. 13.	158
2	2018. 06. 18.	○○○	○○○ 등	626,000	2018. 09. 19.	93
3	2019. 01. 15.	○○○	○○○	500,000	2019. 03. 11.	55
4	2019. 01. 21.	○○○	○○○ 등	1,000,000	2019. 03. 19.	57
5	2019. 11. 01.	○○○	○○○ 등	1,800,000	2019. 11. 27.	26
6	2020. 12. 18.	○○○	○○○	1,500,000	2021. 01. 29.	42
7	2021. 03. 24.	○○○	○○○	1,500,000	2021. 04. 13.	20

자료 :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3.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 세입처리 지연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세입을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 고지에 의하지 않고 현금을 받은 경우 영수보고서에 의해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나 사용료를 현금이나 통장으로 받은 경우 일일 징수일지, 통장사본 등 수납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하고, 세입금은 수납한 다음날까지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산림바이오과)는 [표 2] “산림치유프로그램 사용료

등 징수 현황”과 같이 이용료 등이 결제통장에 입금된 후 짧게는 10일, 길게는 30일이 지나 여러 날을 묶어서 일괄 결제를 받은 후 도 금고에 세입조치 하였다.

그 결과 부정확한 일일마감과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를 저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표 2] 산림치유프로그램 사용료 등 징수 현황

연도	징수일(수납일)	세입일	최장 지연일수
2020	5. 19. ~ 6. 5.	6. 9.	21
	6. 9. ~ 6. 11.	6. 16.	7
	6. 15. ~ 7. 3.	7. 22.	37
	8. 10. ~ 8. 25.	9. 17.	38
	8. 26. ~ 10. 27.	11. 3.	69
	10. 28. ~ 11. 11.	11. 23.	26
	11. 12. ~ 12. 3.	12. 9.	27
2021	4. 5.	4. 14.	9
	4. 10. ~ 5. 7.	5. 14.	34
	5. 8. ~ 5. 26.	6. 2.	25
	5. 27. ~ 6. 7.	6. 11.	15
	6. 8. ~ 6. 21.	6. 30.	22
	6. 22. ~ 7. 5.	7. 14.	22
	7. 6. ~ 8. 31.	9. 14.	70

자료 :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4. 불용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등 환급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차량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는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 후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받아야 하며, 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에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계

산하여 환급청구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는 ●●● 등 차량 5대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지급하였고, 불용차량으로 차량이 매각되었음에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627,100원과 자동차세 63,490원을 환급청구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표 3] “매각(폐차) 차량 보험료 등 미환급 현황”과 같이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하여 690,590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3] 매각(폐차) 차량 보험료 등 미환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매각(폐차)일자	보험료 환급예상액	자동차세 환급예상액	비고
	계	5대		627,100	63,490	
1	●●●	○○○○	20○. ○. ○.	27,280	-	
2	●●●	○○○○	20○. ○. ○.	146,490	13,180	
3	●●●	○○○○	20○. ○. ○.	145,110	14,330	
4	●●●	○○○○	20○. ○. ○.	158,220	10,300	
5	●●●	○○○○	20○. ○. ○.	150,000	25,680	

자료 :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산림자원연구소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 등에 대한 신속한 세입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차량 관련 보험료와 자동차세의 환급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연구소장은

- ① 불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를 환급받도록 신청하시고,(시정)
- ② 조사분석수수료를 즉시 징수하시고,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신속히 세입조치할 수 있는 행정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 미준수

관계기관(부서)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 수목원운영팀)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이하 ‘산림자원연구소’라 한다)는 2019. 5월부터 6월 까지 산림자원의 연구·전시·휴양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였다.

2. 관련법령(판단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된 기관이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일상감사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4]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에 따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할 경우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는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일상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 감사관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 수목원운영팀)은 [표] “2019년 5. ~ 6월 일상감사 미요청 물품구매 현황”과 같이 ‘공용 노후차량 교체’ 등 2천만원 이상인 3건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라남도 감사관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019. 5. ~ 6월 일상감사 미요청 물품구매 현황

(단위 : 천원)

물 품 명	계약금액	계약일	주관부서	일상감사 요청여부
계	139,428			
○○○○○ 교체	79,060	2019. 5. 28.	관리팀	부
○○○○○ 항습기	25,798	2019. 6. 5.	수목원운영팀	부
○○○○○ 시스템	34,570	2019. 6. 19.	관리팀	부

자료 :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139,428천원에 달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계약방법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지 못하여 산림자원연구소의 행정 신뢰를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산림자원연구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 산림생명자원과, 산림바이오과,
완도수목원)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이하 “산림자원연구소”라 한다)는 쾌적한 녹색 휴양공간 조성 및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현황”과 같이 33억 1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40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표]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명세

(단위 : 백만원)

계		2018년 10월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까지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40	3,315	1	17	19	1,461	19	1,535	1	302

자료 : 산림자원연구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

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에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자원연구소는 공사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관리팀 등 4개 부서)는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하자검사대상 40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104회¹⁾ 실시하여야 하는데 51회²⁾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최종검사 대상 13건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종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그 결과 하자발생 시 적기에 보수를 하지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사의 경우 별도의 예산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림자원연구소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1) 2019년 14회, 2020년 51회, 2021년 39회

2) 2019년 12회, 2020년 1회, 2021년 38회

조치할 사항 산림자원연구소는 공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시기 바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